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12. 27. / (총 24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정 석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문 달 해		044-202-1705 044-202-1707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이 라 향		044-202-1720 044-202-1728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국 장 담 당 자	우 승 용 이 지 섭		044-203-2280 044-203-229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과 장 담 당 자	박 지 흥 남 승 현		044-201-3804 044-201-378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부처별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차질없이 병상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
 -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계획 시행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96명(12.27.)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 (12.14) 364명 → (12.17) 595명 → (12.20) 368명 → (12.23) 183명 → (12.27) 96명
- 병상확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병상은 총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를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약간 하회하는 64.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그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030	6,163	5,986	1,529	757	164	
수도권	9,951	5,316	2,592	417	467	80	
서울	4,157	1,947	1,423	224	282	51	
	경기	3,106	1,655	866	151	144	25
	인천	540	336	303	42	41	4
강원	164	36	197	49	20	6	
충청권	482	205	669	171	57	14	
호남권	304	181	708	340	47	15	
경북권	548	163	806	310	78	32	
경남권	581	302	701	144	78	7	
제주	-	-	313	98	10	10	

- 인력의 경우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배정, 전원 절차를 개선하고,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운영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한편, 앞으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최소 10,000병상 이상의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모 결과, 394병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연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거점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선(先)지원 등을 통해 지정된 병원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중에 있으며,**
 - **평택 박애병원과 같이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중에 있다.**
 - 또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장애인 특수병상 역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로 환자 배정 및 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 (Bed-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임상적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음 주에는 당초 3주로 계획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 병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수도권 690명(전체 69%) 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 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 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전담병원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역량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더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21.1.3.) 중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영화관,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12.25.)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점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 (호텔) 예식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유지 미흡 (유원시설) 탑승 대기줄 거리 두기 미흡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개최, 비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게시 등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 동안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등 2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소독·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간 거리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사업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대부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안내방송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터미널) 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 등을 통한 감염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2.20.~12.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그 전 주간(12.13.~12.19.)의 949명에 비해 68명 증가하였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27.) : 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29.~12.5.	12.6.~12.12.	12.13.~12.19.	12.20.~12.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87.7명	661.7명	948.6명	1,017명
60세 이상	116.3명	219명	313.3명	318.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5.9명	27.6명	27.3명	31.3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58건	54건	71건	19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	22.6%	28.4%	27.9% (2,047/7,338)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43.6	38	32.8	31.2
즉시 가용 중환자실	55개 (12.5.9시기준)	62개 (12.12.9시기준)	38개 (12.19.9시기준)	164개 (12.26.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외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환자가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12.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7.6명	82.3명	46.6명	67.6명	62.9명	26명	24.1명
60대 이상	218.1명	25.3명	22.6명	19.1명	20.6명	7.4명	5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80개	14개	15개	32개	7개	6개	10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27.) 총 479,835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2개소
-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지난 주(12.21.~12.27.) 하루 평균 91,307명, 총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의 6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21.1.3.)를 하고 있다.
 -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활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보다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7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3.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u>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 ▶ <u>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u> ▶ <u>집객행사 금지</u> ▶ <u>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 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